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의시행에따른 부천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등의정비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1998. 9. 18

나. 제 안 자 : 부천시장

다. 회부일자 : 1998. 9. 18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6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3차 총무복지위원회(98. 9. 19) 상정의결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총무국장 강석준)

가. 제안이유

○ 지방조직개편추진지침(98. 6. 23 자치 12200-1252호)에 의거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의 개정에 따라 개별 조례에서 행정기구 및 관직이 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한 개정수요가 발생되어 별도의 정비조례를 제정하여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행정기구의 명칭을 포괄적으로 규정

예)공보담당관실 → 시보발행부서, 시정소식지발행부서

○ 관직명을 업무담당과장으로하여 향후 개정수요를 미연에 방지

예) 총 무 국 장 → 문서관리 담당국장

환경위생과장 → 위생업무 담당과장

사 회 계 장 → 의료보호업무 담당주사

○ 계직제 폐지에 따라 담당으로 변경

계 → 삭제, 계장 → 담당

○ 정비조례안의 관리

- 공포 후 개별조례에서 정리하며 제정문은 자치법규집에 수록하지 아니함

☞ 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3. 질의 및 답변요지

○ 없 음

4. 토론요지

가. 찬성토론

○ 계직제가 폐지되고 행정기구의 명칭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로서 반대의견 없이 전원 찬성

나. 반대토론

○ 없 음

5. 심사결과

○ 원안의결

6. 소수의견 요지

○ 없 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의시행에따른 부천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등의정비에관한조례안

의안번호	제41호
의결년월일	98. 9. 22 (제64회)

제출년월일 : 1998. 9. 18

제 출 자 : 부 천 시 장

□ 제안이유

○ 지방조직개편추진지침(98. 6. 23 자치 12200-1252호)에 의거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의 개정에 따라 개별 조례에서 행정기구 및 관직이 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한 개정수요가 발생되어 별도의 정비조례를 제정하여 정비하고자 함

□ 주요골자

○ 행정기구의 명칭을 포괄적으로 규정

예)공보담당관실 → 시보발행부서, 시정소식지발행부서

○ 관직명을 업무담당과장으로 하여 향후 개정수요를 미연에 방지

예) 총 무 국 장 → 문서관리 담당국장

환경위생과장 → 위생업무 담당과장

사 회 계 장 → 의료보호업무 담당주사

○ 계직제 폐지에 따라 담당으로 변경

계 → 삭제, 계장 → 담당

○ 정비조례안의 관리

-공포 후 개별조례에서 정리하며 제정문은 자치법규집에 수록하지 아니함

☞ 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의시행에따른 부천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등의정비에관한조례안

제1조(부천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의 개정) 부천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기획실장"을 "직제상의 국순위에 의한 선임국장"으로 하고, "주무실·국장"을 "직제상의 국순위에 의한 차선임국장"으로 하며, 동조제3항중 "실·국장"을 "국장"으로 한다.

제6조제2항중 "기획담당관"을 "시정조정업무 담당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2조(부천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의 개정) 부천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중 "실·국장"을 "국장"으로, "담당관·과장급"을 "실·과장"으로 한다.

제3조(부천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의 개정) 부천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2호중 "실·국장"을 "국장"으로 한다.

제4조(부천시시민옴부즈만운영에관한조례의 개정) 부천시시민옴부즈만운영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시민옴부즈만에 관한 사무기구는 부시장 직속으로 하며 사무기구에는 옴부즈만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무원을 둔다.

제5조(부천시시민옴부즈만보수및복무에관한조례의 개정) 부천시시민옴부즈만보수및복무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제24조제1항·제2항, 제26조, 제27조제3항, 제28조제2항, 및 제29조중 "옴부즈만계장"을 "옴부즈만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제6조(부천시생활개혁위반사항신고시민보상금지급조례의 개정) 부천시생활개혁위반사항신고시민보상금지급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 "시민과"를 "민원실"로 하고, 동조제2항중 "시민과장이" 및 "총괄"을 삭제한다.

제5조제2항중 "기획담당관"을 "생활개혁업무 담당부서의 장"으로 하고, "공보담당관, 사회복지과장, 환경위생과장, 여성정책과장, 도로과장"을 "공보, 사회복지, 환경·위생, 여성복지업무 및 도로관리업무 담당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7조(부천시학교급식시설및설비지원조례의 개정) 부천시학교급식시설및설비지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중 "기획실장, 보건사회국장"을 "위생업무 담당국장, 학교교육관련업무 담당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8조(부천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조례의 개정) 부천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간사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두되 민자유치업무 담당부서의 장 및 민자유치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제9조(부천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의 개정) 부천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중 "기획실장"을 "경영수익업무 담당부서의 장"으로 하고, "기획담당관, 세정과장"을 "세입업무 담당과장, 회계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1호중 "기획실장"을 "경영수익업무 담당부서의 장"으로, 동항제2호중 "기획담당관"을 "경영수익업무 담당주사"로, 동항제3호중 "경영사업계장"을 "경영수익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10조(부천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의 개정) 부천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중 "내무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부천시홍보전시관설치조례의 개정) 부천시홍보전시관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중 "공보담당관"을 "홍보업무 담당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12조(부천시시보발행조례의 개정) 부천시시보발행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중 "공보담당관실"을 "시보 발행부서"로 한다.

제13조(부천시시정소식지발행조례의 개정) 부천시시정소식지발행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중 "공보담당관실"을 "시정소식지 발행부서"로 한다.

제14조(부천시무역상담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의 개정) 부천시무역상담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중 "국제협력담당관"을 "무역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별지서식중 "계장"을 삭제하고, "담당관"을 "과장"으로 한다.

제15조(부천시공인조례의 개정) 부천시공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11조제1항 및 제2항, 별지 제4호서식중 "총무과장"을 "공인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제16조(부천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의 개정) 부천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분야별로 간사를 두되 통합방위협의회업무, 민방위재난관리업무 및 심리전에 대비한 홍보업무 담당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5조제2항중 "총무국장"을 "통합방위협의회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실·국장"을 "국장"으로 한다.

제17조(부천시포상조례의 개정) 부천시포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중 "총무과장"을 "포상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제18조(부천시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의 개정) 부천시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중 "기획실장"을 "재해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

제19조(부천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의 개정) 부천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중 "재난관리계장"을 "재난업무 담당주사"로 하고, 제10조제1항중 "총무국장"을 "재난업무 담당국장"으로, "재난관리계장"을 "재난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제20조(부천시정보화촉진조례의 개정) 부천시정보화촉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중 "실·국장"을 "국장"으로 하고, 동조제5항 및 제11조제2항중 "정보통신과장"을 "정보화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제21조(부천시시세조례의 개정) 부천시시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서식중 "사무장"을 "담당자"로 한다.

제22조(부천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의 개정) 부천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중 "시장, 구청장, 동장"을 "시장"으로 하고,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포상금 지급신청)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월분징수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중 "시장 또는 구청장"을 "시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중 "계장"을 "담당"으로 하고, 별지 제3호서식중 "동장"을 삭제하며, "세정과장"을 "○○과장"으로 한다.

제23조(부천시시세감면조례의 개정) 부천시시세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서식중 "구청장"을 "시장"으로 한다.

제24조(부천시수입증지조례의 개정) 부천시수입증지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6호서식중 "계원"을 삭제하고, "계장"을 "담당"으로 하며, 별지 제10호시식중 "계장"을 삭제한다.

제25조(부천시물품관리조례의 개정) 부천시물품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중 "회계과"를 "물품관리업무 담당과"로 하고 제30조중 "회계과장"을 "물품관리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제26조(부천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의 개정) 부천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중 "재정경제위원회"를 "시의회 물가관련 상임위원회"라 한다.

제9조제2항중 "지역경제과장"을 "물가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제10조제3항중 "재정경제국장"을 "물가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

제27조(부천시도시가스수요가기금설치및운용조례의 개정) 부천시도시가스수요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중 "재정경제국장"을 "가스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지역경제과장"을 "가스업무 담당과장"으로 하며, "가스안전계장"을 "가스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제28조(부천시소규모유통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의 개정) 부천시소규모유통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중 "재정경제국장"을 "유통업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지역경제과장"을 "유통업업무 담당과

장"으로 하며, "유통계장"을 "유통업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제29조(부천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의 개정) 부천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3호중 "재정경제국장"을 "중소기업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공업진흥과장"을 "중소기업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제30조(부천시행정종합정보센터및시민봉사실설치운영조례의 개정) 부천시행정종합정보센터및시민봉사실설치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중 "총무처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하고, 별지 제2호서식중 "계장"을 "담당"으로 한다.

제31조(부천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의 개정) 부천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중 "시민복지국장"을 "영세민업무 담당국장"으로 "사회복지과장"을 "영세민업무 담당과장"으로 "사회계장"을 "영세민업무 담당주사"로 하며, 동조제4항중 "사회복지과장"을 "영세민업무 담당과장"으로 "사회계장"을 "영세민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제32조(부천시자립장학금지급조례의 개정) 부천시자립장학금지급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중 "시민복지국장"을 "자립장학금업무 담당국장"으로 "사회복지과장"을 "자립장학금업무 담당과장"으로 "사회계장"을 "자립장학금업무 담당주사"로 하며, 동조제4항중 "사회복지과장"을 "자립장학금업무 담당과장"으로 "사회계장"을 "자립장학금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제33조(부천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의 개정) 부천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 "시민복지국장"을 "의료보호업무 담당국장"으로 "사회복지과장"을 "의료보호업무 담당과장"으로 "사회계장"을 "의료보호업무 담당주사"로 하며, 동조제3항중 "사회복지과장"을 "의료보호업무 담당과장"으로 "사회계장"을 "의료보호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제34조(부천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의 개정) 부천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중 "기획실장, 총무국장, 시민복지국장, 부천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를 "총무업무 담당국장, 노인복지업무 담당국장, 경제업무 담당국장, 부천시의회 노인복지소관 상임위원회"라 하고, 동조제5항중 "사회복지과장"을 "노인복지업무 담당과장"으로 하며, "가정복지계장"을 "노인복지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제11조제1항제1호중 "시민복지국장"을 "노인복지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동조제2호중 "사회복지과

장"을 "노인복지업무 담당과장"으로 하며, 동조제3호중 "가정복지계장"을 "노인복지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중 "계"를 삭제하고, "계장"을 "담당"으로 한다.

제35조(부천시새마을운동협의회조례의 개정) 부천시새마을운동협의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중 "농촌지도소장"을 삭제하고, "총무과장, 사회복지과장, 산업과장"을 "새마을업무 담당과장, 농업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제36조(부천시여성위원회운영조례의 개정) 부천시여성위원회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중 "시민복지국장"을 "여성복지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제8조중 "여성정책과장"을 "여성복지업무 담당과장"으로 "여성정책계장"을 "여성복지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37조(부천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의 개정) 부천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중 "시민복지국장"을 "여성복지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여성정책과장"을 "여성복지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제38조(부천시부녀아동상담소설치조례의 개정) 부천시부녀아동상담소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중 "여성정책과장"을 "부녀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제39조(부천시문화예술위원회조례의 개정) 부천시문화예술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항중 "내무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하고, 제8조제1항중 "문화체육과장"을 "문화예술업무 담당과장"으로 하며, "문화계장"을 "문화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제40조(부천시문화예술발전기금조성및운용조례의 개정) 부천시문화예술발전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중 "시민복지국장"을 "문화예술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동항 제2호중 "문화체육과장"을 "문화예술업무 담당과장"으로 하며, 동항제3호중 "예술계장"을 "예술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제41조(부천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의 개정) 부천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중 "시민복지국장"을 "예술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문화체육과장"을 "예술업무 담당과장"으로 하며, 동조제7항중 "예술계장"을 "예술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42조(부천시체육진흥협의회운영에관한조례의 개정) 부천시체육진흥협의회운영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중 "문화체육과장"을 "체육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제43조(부천시청직장운동경기부설치조례의 개정) 부천시청직장운동경기부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

정한다.

제3조제2항중 "시민복지국장"을 "체육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

제44조(부천시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의 개정) 부천시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농촌지도소"를 삭제하고, 제5조제2항중 "문화체육과장"을 "청소년업무 담당과장"으로 하며, 제7조제2항중 "청소년업무 담당계장"을 "청소년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45조(부천시하수도공기업설치조례의 개정) 부천시하수도공기업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중 "국장으로"를 "관리자로"로 한다.

제46조(부천시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의 개정) 부천시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중 "토지평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계장과 실무자로 한다"를 "토지평가업무 담당주사 및 담당이 된다.

제47조(부천시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조례의 개정) 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간사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두되, 간사 및 서기는 부동산중개업업무 담당주사 및 담당이 된다.

제48조(부천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의 개정) 부천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중 "계장"을 "담당"으로 한다.

제49조(부천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의 개정) 부천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호중 "교통부장관"을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50조(부천시건축조례의 개정) 부천시건축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중 "건축업무를 담당하는 소관부서의 계장 및 담당자가"를 "건축업무 담당주사 및 담당이"로 한다.

제51조(부천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의 개정) 부천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2호 가목중 "재무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하고, 동호 나목중 "건설부장관"을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52조(부천시보건소수가조례의 개정) 부천시보건소수가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4호서식 내지 별지 제5호서식중 "보건사회부령"을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53조(부천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의 개정) 부천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중 "보건행정계장이"를 "주무담당 주사가"로 한다.

제54조(부천시수도사업설치조례의 개정) 부천시수도사업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중 "상수도사업소장"을 "기관의 장"으로 한다.

제55조(부천시중수도운영조례의 개정) 부천시중수도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중 "상수도사업소장"을 "상수도를 담당하는 기관의 장"으로 한다.

제56조(부천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운영조례의 개정) 부천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중 "정수과장"을 "수돗물수질평가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수질계장"을 "수돗물수질평가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57조(부천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의 개정) 부천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공영개발사업소장"을 "공영개발사업의 관리자"로 한다.

제58조(부천시시립도서관설치운영조례의 개정) 부천시시립도서관설치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간사)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도서관관리업무 담당 주사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3호서식중 "계"를 삭제하고, "계장"을 "담당"으로 한다.

제59조(부천시도서관및독서진흥위원회조례의 개정) 부천시도서관및독서진흥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중 "관리계장"을 "도서관관리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제60조(부천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의 개정) 부천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5항중 "내무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61조(부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의 개정) 부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제2항중 "환경복지위원회"를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 이 조례는 개별조례에서 정리됨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